

## 2. 建設交通部와 그 所屬機關職制中 改正令

大統領令 第14,643號 1995. 5. 1

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 제1항중 “·공역과”를 삭제하고, 동조 제2항중 “·공역과장”을 삭제한다.

제54조 제6항에 제9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항공장애물의 관리

10. 항공정보업무의 개선 및 지도

11. 항공정보 간행물의 발간 및 관리

12. 공역의 관리

제54조 제8항을 삭제한다.

별표1 건설교통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“829”를 “827”로, 기능직계 “150”을 “148”로 하고, “10등급 위생원 2”를 삭제한다.

별표8 지방항공청공무원정원표중 총계 “442”를 “461”로, 일반직 계 “374”를 “397”로 하고, 항공사무관 “10”을 “9”로,

항공주사 “65”를 “72”로, 항공주사보 “64”를 “75”로, 항공서기 “22”를 “28”로 하며, 기능직 계 “68”을 “64”로, 10등급 사무보조원 “46”를 “42”로 한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6인(10등급위생원 2 및 10등급 사무보조원 4)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◇개정이유◇

항공교통관제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할인력을 보강하고, 지방항공청의 일부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임.

◇주요골자◇

가. 서울지방항공청의 공역과를 폐지하고, 그 기능은 항공운항과로 이관함(영 제54조 제6항).

나. 관제인력 24인을 증원하되, 기존정원중 7인을 상계감축하고, 17인(5급 -1, 6급이하 +24, 기능직 -6)을 순증함(영 별표1 및 별표8). 〈법제처 제공〉

**당신의 집이라면 부실공사 하겠습니까?**